

建築法中改正法律

建築法 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2條策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垈地”라 함은 하나의 建築物 또는 하나의 建築物과 이에 附屬되는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範圍를 말한다. 다만, 共同住宅과 工場에 있어서는 運營上 또는 用途上 不可分의 関係에 있는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範圍를 말한다.

第2條第3號 중 “旅館·호텔”을 “宿泊業用建築物”로 한다.

第2條第5號 중 “地表”를 “地表面”으로 한다.

第2條第11號 중 “不燃性의 材料를”을 “不燃性의 材料로서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것을”로 한다.

第2條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大修繕”이라 함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變更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第14號를 削除한다.

第2條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道路”라 함은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可能한 幅 4미터 이상의 道路(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揭記하는 것의 하나에 該當하는 도로 또는 그豫定道路를 말한다.

가. 都市計劃法·道路法·私道法 기타 関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것.

나. 建築許可時 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郡守가 그 位置를 指定한 道路

第2條第19號·第21號 및 第23號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각각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3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都市計劃区域 이외의 区域과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区를 제외한 区域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邑·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5條 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하고, “增築 또는 改築”을 “增築·改築 또는 大修繕”으로 하며, 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都市計劃区域,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聚落地区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区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

第5條에 第2項 내지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接受한 때에는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臺帳에 이를 記載하고 保管하여야 한다.

③建築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建築工事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變更은 이를 許可 또는 申告없이 할 수 있다.

④市長·郡守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規漠·構造의 建築物 또는 設備를 가진 建築物의 建築(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 이하의 增築·改築을 除外한다)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條第1項 및 第2項 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각각 “또는 大修繕”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7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⑦建築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違反事項을 報告한 工事監理者에게 이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의 指定를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監理에 대한 報酬의 支給를 拒否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不利益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7條第1項 중 “着手하거나 完了한 때”를 “着手한 때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를 完了한 때”로 하고, “前條第2項”을 “第6條第2項”으로 한다.

第7條第2項 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3項 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한다. 第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의 2 (土地굴착部分에 대한 整理 등) ① 垈地를 造成하거나 建築工事에 隨伴하여 土地를 굴착한 者는 當該 굴착部分에 대하여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危險發生의 防止, 環境의 保存 기타 필요한 整理를 하여야 한다.

②工場의 建築主는 그 垈地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面積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하여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公害防止 및 造景을 위한 植樹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

反한 者에 대하여 그 義務履行에 필요한 措置를 命하고 그 措置에 응할 때까지 第 7 條 第 2 項의 规定에 의한 竣工検査를 拒否할 수 있다.

第10條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 5 條第 1 項第 2 號 및 第 3 號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構造의 安全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11條第 2 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한 補強을 함으로써 그 構造의 安全이 確認된 때에는 그 려하지 아니하다.

第12條第 2 項 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17條第 2 號 및 第 3 號중 “旅館 · 호텔”을 각각 “宿泊業用 建築物”로 한다.

第18條第 1 項 중 “旅館”을 “宿泊業用 建築物”으로 하고, 同條第 3 項 중 “前 2 項”을 “第 1 項 및 第 2 項”으로 한다.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 (住宅의 居室 設置) 住宅의 居室을 地表面 이하에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換氣 기타 衛生上 支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20條第 2 項 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22條의 2第 1 項 後段 중 “前項”을 “前段”으로 하고, 同條第 2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22條의 3 第 2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23條 중 “第 7 條의 2에 規定된”을 削除한다.

第23條의 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3條의 4 (建築物에 있어서의 热損失 防止)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止에 따라 热의 損失을 防止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4條中 “階段”을 “開口部 階段”으로 한다.

第25條 중 “建築材料의 品質은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에 適合한 것이어야 하되.”를 “建築材料는 工業標準化法의 规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表示品으로 하되.”로 하고,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檢定基準에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를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檢定基準에 適合하다고 建設部長官이 指定한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第26條第 2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27條第 2 項중 “第23條의 規定에 의한”을 “第 7 條의 2에 規定된”으로 한다.

第30條第 1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築線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 2 條第 15 號의 规定에 의한 所要幅에 未達되는 幅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所要幅

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反對側에 傾斜地 · 河川 · 鉄道 등 線路敷地 기타 이와 類似한 것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傾斜地 등이 있는 側道路境界線에서 所要幅에 상당하는 不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第30條第 3 項중 “前項”을 “第 2 項”으로 한다.

第32條第 2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하고, 同條第 3 項중 “公園境域 또는 그豫定地”를 “公園遊園地의 境域 또는 그豫定地”로 하며 “公園目的”을 “公園 또는 遊園地의 目的”으로 한다.

第33條의 2第 3 項중 “前項”을 “第 2 項”으로 한다.

第33條의 3第 1 項 및 第 2 項중 “前條第 2 項”을 각각 “第33條의 2第 2 項”으로 하고, 同條第 3 項 중 “前項”을 “第 2 項”으로 하며, 同條第 4 項중 “前項”을 “第 3 項”으로 하고, 同條第 5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第 1 項 내지 第 4 項의 规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 및 特定街区 整備地区내의 国公有地에 관하여는 都市計酬法 第24條 내지 第28條 · 第33條 내지 第53條 · 第82條 및 第86條의 规定을 準用한다. 다만, 당해 地域내의 土地(公共施設用地를 제외한다) 全部가 1人の 所有인 경우에는 都市計酬法 第34條 · 第39條 내지 第44條의 规定을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4章에 第38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8條 (聚落地区내에서의 建築物) 國土利 用管理法의 规定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地区내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建築制限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9條第 1 項 本文중 “建築面積” 다음에 “(基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를 插入한다.

第39條第 1 項 第 3 號중 “準住居地域”을 削除한다.

第39條第 1 項 第 4 號중 “商業地域” 다음에 “과 準住居地域”을 插入한다.

第39條第 1 項 第 5 號를 削除한다.

第39條第 1 項第 6 號중 “商業地域” 다음에 “또는 準住居地域”을 插入하고 “ 基地로서 市長 · 郡守가 指定하는 区域内에서는”을 “ 基地에서 는”으로 한다.

第39條第 2 項중 “建築面積의 基地面積에 대한 比率을 前項에”를 “建蔽率 第 1 項에”로 한다.

第39條에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 1 項第 4 號 · 第 6 號의 規定 및 第 2 項의 規定(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蔽率을 10分의 6 미만으로 制限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住居用建築物과 工業用建築物의 建蔽率은 10分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第40條第 1 項중 “建築延面積”을 “延面積(垈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로 한다.

第5章에 第4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1條의 2 (垈地안의 空地)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線 및 隣接 垈地境界線으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거리를 띄어 建築하여야 한다.

第42條第 1 項第 1 號중 “·大修繕 또는 主要變更” 을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42條第 1 項第 2 號 및 第 4 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保安上 또는 衛生上 顯著히 有害하다고 인정될 때

4. 第 5 項第 1 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工事에着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竣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第42條第 2 項중 “前項第 1 號”를 “第 1 項第 1 號”로 하고, 同條第 5 項중 “前項”을 “第 4 項”으로 한다.

第42條의 2 第 1 項중 “前條第 1 項第 1 號”를 “第42條第 1 項第 1 號”로 하고, 同條第 2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43條第 1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45條第 1 項에 第 4 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42條第 1 項第 2 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의 取消措置와 建築物의 撤去 · 改築 또는 大修繕의 命令

第47條에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에 있어서는 第 2 章 내지 第 5 章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2條중 “建築物 또는 垈地”를 “建築物 및 垈地”로 하고, 同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垈地가 道路에 沿하여 떠모양으로 指定된 商業地域 ·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区와, 기타의 地域 · 地区(防火地区를 제외한다)에 결치는 경우에 建築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이들 地域 또는 地区에 建築할 때에는 그 建築物 및 垈地의 全部에 대하여 商業地域 · 美觀地区 또는 高度地区내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53條의 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3條의 4 (同前) 第 6 条 第 1 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建築物에 附隨되는 液狀廢棄物淨化槽에 관한 設計의 경우에는 汚物清掃法 第1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3條의 6 第 2 項중 “前項”을 “第 1 項”으로 한다.

第54條중 “第 5 項 · 第39條 · 第40條 또는 第41條”를 “第 5 項第 1 項 本文 · 第39條第40條 · 第41條 또는 第41條의 2”로 하고,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55條第 1 號중 “第39條第 1 項”을 “第39條 第 1 項 및 第 3 項”으로 한다.

第55條第 2 號중 “第22條第 2 項” 다음에 “· 第22條의 2 · 第22條의 3”을, “第23條의 3第 1 項” 다음에 “· 第23條의 4”를, “第36條第 2 項” 다음에 “第38條”를 각각 插入한다.

第55條 第 3 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 6 条第 2 項 · 第 6 項 · 第 7 項 · 第 7 条 3 項 第 7 項의 2 · 第 9 項의 2 第 1 項 · 第 2 項 · 第 29 項 또는 第39條의 2 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한者

第55條第 5 號중 “策42條第 1 項의 規定”을 “第 9 項의 2 第 3 項 및 第42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한다.

第55條第 6 號중 “第 5 項 · 第39條 · 第40條 또는 第41條”를 “第 5 項第 1 項 本文 · 第39條 · 第40條 · 第41條 또는 第41條의 2”로 하고, “·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56條중 “· 第53條의 2 第 2 項 但書의 規定에 違反한 工事施工者 및 工事監理者” 및 “· 第2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57條중 “前 3 項”를 “第54條 내지 第56條의”로 한다.

第58條를 削除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国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地区내에서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既存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第 2 項第 15 號의 規定에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同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道路로 본다.

③ (既存垈地의 分割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에 2 이상의 既存建築物(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垈地面積의 最少限度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